

제21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10월 정기) 녹취록

회의명	제21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일시장소	'23. 10. 23(월) 16:00~17:30, 대면 회의
참석자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6), 각 안건 담당 과·계장
부의안건	도경찰청 보고 3건, 위원회 보고 1건, 심의안건 2건

위원회 개최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도경찰청 보고(1건)

위원장) 도경찰청 업무보고입니다. 도경찰청에서는 「자율방범대 조직 신고 현황 및 활성화 대책」 등 3건에 대해 보고할 예정입니다.

부서 보고가 끝나면 질의응답 후, 다음 부서 보고로 넘어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자율방범대 조직 신고 현황 및 활성화 대책

-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위원장) 먼저, 생활안전과입니다. 발표하실 도경찰청 생활안전계장께서는 나와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계장) (업무보고 후)

위원장) 이때까지 3개 기능을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보고받고 나서 나중에 종합적으로 질문을 했었죠? 다음은 여성 청소년 보고해 주십시오.

2.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추진

- 아동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아동청소년계장) (업무보고 후)

3. 플랫폼 치안 구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길라잡이팀」 운영

- 교통과 교통계

교통계장) (업무보고 후)

위원장) 지금 보니까 회의 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일단 먼저 보고를 하시도록 하고 다음에 질문을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 절차는 좀 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싶네요. 왜냐하면 질의 내용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왔다갔다 하면서 답변해야 하나가요.

위원장) 생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 분은 질의해 주십시오.

고규정 위원) 자료를 보면, 합천은 신고된 자율방범대 조직과 인원이 한 명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생활안전계장) 저희들도 이제 신고를 받아보면서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통합이 좀 안되는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아직 신고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어쨌든 기간을 충분히 줬기 때문에 10월까지의 지금 정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주열 위원) 같은 내용이면 합시다마는 기존에 활동하던 조직 개수와 활동 인원들 현황들은 다 파악은 돼 있는데, 합천 같은 경우에도 조직이 분명히 있기는 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안전계장) 네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계장님 우리가 자율방범대 현황 파악 문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심의 의결 의 형식으로 지휘권 행사한 적이 있죠. 그 당시 우리가 했을 때는 안전과 관련하여 자율방범대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붙임 파일로 양식을 보낸 적이 있는데, 10월 말까지 보고를 이 양식에 맞추어가지고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전계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자율방범대와 관련하여, 지난해 연말에 했던 우리 경상남도 안전지수 발표에서 범죄 분야가 4등급을 받는 바람에 그 당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도 상당히 질타를 받았고 이걸 좀 제대로 하기 위한 그런 전면적인 압박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숫자를 확충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 최근에 이상범죄 동기 범죄 이 문제 등등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정도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에서도 여러 관계 기관들이 자율 방범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자율방범대 상해보험 지급이라든지 복지를 적용하려고 하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상당히 예산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쨌든 이분들에게 뭔가 지원책을 내놓아가지고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주십시오

생활안전계장)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규학 위원) 한규혁 위원입니다. 지금 현황표에 보니까 지금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는 건가요

생활안전계장) 네 맞습니다.

한규학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진주 같은 데는 36개 조금 이렇게 읍면동보다

많은 게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생활안전계장) 실제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 창원에 반송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1개 동 안에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한 두세 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규학 위원)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자방대 조직 활성화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경찰서에 대해서 포상하는 방안도 한번 가져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하동산청 의령 등 군 단위도 잘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좀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기중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자치경찰정책과장)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님 말씀하고 비슷한 데, 자율방범제 이 부분은 우리가 2년 연속 사회안전지수 범죄분야에서 4등급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활성화 대책을 통해 가지고도 오히려 성적이 좋지 않고 또 다시 4등급을 받는 오명을 쓰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선 서에 담당자나 또는 기관장 정도 한번 이렇게 불러 모으셔 가지고 요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적어도 개선하고 활성화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생활안전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혁 위원) 여성청소년과 관련 해서, 지금 19년 출생자가 경남에서 만7천여 명인데, 그 중 만 3세가 되면 대부분이 어린이집 지원을 다 받는 상황인가요?

여성청소년계장) 네 맞습니다.

김진혁 위원) 그 인원은 어떻게 파악이 되죠?

여성청소년계장) 그 인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출생관리를 하고 있으며 사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는 것과 지자체 읍면동에서도 다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유아원을 보내면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는 급여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걸로 해서도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규학 위원) 교통안전과는 이번에 오지 않았나요?

교통계장) 네 시설과만 왔습니다.

한규학 위원)이번에 추석도 지났고 또 10월달에 행사도 많고 해서 교통안전 부분에 보고할 만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안전 부분도 같이 와서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김주열 위원) 교통안전시설 길라잡이팀 구성에 대해 시군구별로 담당자들과의 어떤 협조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원활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교통계장) 실질적으로 제일 현장에서 많이 보는 게 신호, 횡단보도 등 시설을 봐야 하다 보니 일주일에 서너 번씩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가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들은 일하는 거만큼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교통안전시설 길라잡이팀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죠 도로망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하는 그런 분야죠. 그런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거기 참여하는 데가 있는 가요

교통시설계장) 워크숍 등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어쨌든 자치경찰 사무에 관해서는 경찰청장을 지휘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게 지휘를 하려면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일

선에 있는 집행 기관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재의 현황들은 여러분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는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나 의논이 필요할 때는 자치경찰위원회를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시설계장) 네 협업을 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이 있으면 반드시 통보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규정 위원) 이 길라잡이 팀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최종적으로는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지자체나 도로관리청 이죠 결국 도로관리청이라고 보면 시내 같으면은 시가 될 거고 지방도나 국토부부터 도로관리청이 될 건데 그쪽 팀하고 어쨌든 예산 확보를 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만 이 팀의 존재 가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협조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시설계장) 올해의 경우 25군데 진행을 한 곳 중 11군데 정도 완료가 되었고, 진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긴 하지만 그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기관하고 시내 구청 또 창원시하고 해서 대학생 자보도 만들고 산청 간디 고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사고도 군청, 또 공단도 참석을 해가지고 진행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개선 완료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규정) 어쨌든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설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의 협조가 가장 필요할 텐데요. 도로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잘 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시설계장) 협조를 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업무보고(1건)

위원장) 위원회 업무보고입니다.

자치경찰담당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중간보고
- 자치경찰총괄 자치경찰담당**

자치경찰담당) 자치경찰담당입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진행사항에 대해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 23.5.9.자 대통령령에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영상회의 운영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는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다른 조례 규정과 비교하였습니다.

우선, 경상남도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을 보면, ‘서면회의’의 경우 경미하거나 긴급시 개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격영상회의’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아직 미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이에, 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선제적으로 규정하게 되는데,

서면, 원격영상회의에 관하여 규정한 제5조 제3항에 대하여, 지난 20차 정기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것과 같이 ‘회의’에 ‘원격영상회의를 포함’, ‘긴급, 경미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규정에 위 조례에 맞춰 통일하여 입법체계에 맞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또 자문기구에 관한 제9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원회(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가 직접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세웠으나,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자문기구’라고 주장하며 ‘도지사’가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현재 부산시 등 4개의 시도에서는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설치권자이나, 경기도 한 곳에서는 도지사가 설치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정책자문단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해석과 설치권자에 대한 이견이 있어 10. 10.자로 행정자치부 소관부서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였고, 1차 해석 내용에 따라 법제처에 2차 해석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 보고 첫 번째 내용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조례에 둔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두 번째 내용에 정책자문단의 구성 주체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서 이 소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위원장은 정책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도청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정책자문단 위원들에게 회의비나 수당도 지급하고 하려고 하면은 도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도지사가 설치’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기에, 자치 위원회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바로 수용하지 않고, 상급 기관에 우리가 법령 해석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21년도에 복지수당 지급과 관련해가지고 법제처에 우리가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와 똑같이 이번에도 법률 해석을 요청을 할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각 위원회의 어떤 입법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다른 시도에서는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한 곳에서 도지사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할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진행이 이제 속도가 좀 늦어졌다.고 설명

드리고, 추후 법률 해석이 나오면 그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 의결 안건입니다.

인사권의 담당 관계자 외에는 직원분들은 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의결(2건)

(안건제45호) 경남경찰청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추천 (안)

위원장)안건 제45호, 「경남경찰청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추천」 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제15쪽, 안건 제45호, '경남경찰청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추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경찰청에서는 '2023년 경남청 특별승진 운영 세부계획'에 따라 특별승진대상 29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남경찰청에서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에 심사위원 추천을 요청하여, 추천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승진 선발인원은 총 29명으로, 계급별로는 경감 3명은 경찰청에 추천하고, 그 외 경위 6명, 경사 12명, 경장 8명은 경남경찰청에서 최종 선발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일정으로는,

10.16.(월)까지 도경 및 경찰서에서 추천대상을 접수받아

10.24.(화) 경감급 공적심사를 실시하고,

11.2.(목) 경위급이하 공적심사를 개최 후

승진대상을 선발하여 12.31. 승진임용 예정입니다.

경남경찰청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9명으로 구성되는데,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는 2~3배수를 추천받아 최종 2명을 선정하여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근무경력·여론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나눠드린 보고서에 기재된 추천후보자 10명 중에서 6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추천후보자는 경정급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경력·여론 및 특진대상자 부서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 비공개」

폐회

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10월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